

「공공 AI사업 추진체계 유연화 방안 마련」 제안요청서

2026. 06.

담당	인공지능정부본부 AI정부기획팀	팀장 박선주	TEL : 053-230-1601
		선임 김미진	TEL : 053-230-1672

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
목 차

I . 사업 개요	1
1. 배경 및 필요성	1
2. 추진 체계	1
3. 추진 일정(안)	2
II . 제안요청 내용	3
1. 일반 사항	3
III . 제안서 작성 안내	5
1. 입찰시 유의사항	5
2. 세부 작성지침	6
IV . 입찰 및 제안 안내	7
1. 낙찰자 선정방식	7
2. 입찰참가자격	7
3. 제안 평가 관련 사항	8
4.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	10
5. 제안안내	10
6. 기타 유의사항	10

- ☐ 사업명 : 공공 AI사업 추진체계 유연화 방안 마련
- ☐ 사업예산 : 7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- ☐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 ~ 180일

1. 배경 및 필요성

- o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보화사업 프로세스 적용으로 공공 AI 사업 수행 비효율 발생
- o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화 사업 프로세스 유연화 필요

< 공공 AI사업 프로세스 유연화 필요성 >

한계점	주요내용
① 기술-사업 주기 불일치	-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, 현행 정보화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실제 시스템 구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완료 시점에는 기술 노후화 발생
② 절차상 비효율	- AI 기능을 일부만 도입·교체할 경우에도 전면 재구축으로 진행되어 예산·행정 비효율 발생
③ 운영관리 미흡	- 현행 유지보수 체계는 장애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, AI 모델 성능 저하에 적시 대응이 어려움

2. 추진 체계

구 분	주요 업무
주관기관 행정안전부	- 예산확보 및 사업수행 지원
발주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(이하 지능정보원)	- 사업 세부계획 수립,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,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, 산출물 검토 및 검사
사업수행사	- 과제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과업이행 - 과제 진행사항 보고, 과제 결과 보고 및 산출물 제출 -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

3. 추진 일정(안)

구 분	M	M+1	M+2	M+3	M+4	M+5
○ 공공 AI 사업 유형화 및 유연화 적용 과제 선정						
• AI 기술 적용 방식에 따른 공공 AI 사업 유형 분류						
• 공공 AI 사업 추진사례 및 관련 법·제도 분석을 통해 유연화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유형 선정						
○ 공공 AI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						
• AI사업에 적합한 추진체계 개선과제 및 방향 도출						
• AI사업에 적합한 단계별 유연화된 추진 체계 마련						
• 재설계된 프로세스 적용시 정량적 효과 분석						
○ 법·제도 개선안 마련						
• 추진체계 유연화에 필요한 법·제도 개정안 마련						
• 법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						
○ 사업 추진현황 보고						
• 주간보고						
• 중간보고						
• 종료보고						

1. 제안요청 사항

가. 공공 AI 사업 유형화 및 유연화 적용 과제 선정

- (유형화) AI 기술 적용 방식에 따른 공공 AI 사업 유형 분류
 -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분류하여 공공 AI 사업 유형화
 - ※ PoC·BMT, 신규구축, 운영서비스 AI모델 도입·교체 등 최소 5개 이상 유형의 및 각 유형별 특성·대표사례 기술
 - 하나의 사업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(예: PoC와 신규구축이 결합된 사업)에도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 마련
 - ※ (기준 예시) 사업목적, 예산비중, 핵심 산출물 등
 - 유형 분류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(10명이상)
 - ※ AI기술전문가, 발주자, 사업자, 관계부처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가 구성
- (과제선정) 공공 AI 사업 추진사례 및 관련 법·제도 분석을 통해 유연화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유형 선정
 - 유형별 사업 추진 쏴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·제약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, 단계별 문제점 리스트 작성
 - ※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의 AI사업 추진사례를 유형별 3건이상 분석(비용·시간 등 정량분석, 담당자 인터뷰 등 정성분석 포함)
 - 유형별로 유연화 가능 범위와 법·제도적 제약 범위 구분
 - ※ 전자정부법, 국가계약법, 소프트웨어진흥법,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분석 필요
 - 문제점 및 법·제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유연화 과제선정

나. 공공 AI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

- (개선방향 도출) AI사업에 적합한 추진체계 개선과제 및 방향 도출
 - 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 도출
 - ※ 관련 부처(AI전략위, 조달청 등)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 공동 도출
 - 국내외 유사사례*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및 개선 방향 시사점 도출

- * 미국 GSA AI조달 가이드라인, 영국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, EU Model Contractual Clauses (MCC-AI) , 국내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서비스 등
- 기존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제도*를 공공 AI 사업 추진체계와 연계·확장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
 - * 정보시스템 감리제도(감리시점 확대, AI 감리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도출, AI 감리 전문인력 자격 체계 등), PMO(AI-PMO 역할 확대, AI-PMO 전문성 기준 등)
- o (프로세스 재설계) AI사업에 적합한 단계별 유연화된 추진체계 마련
 - 기획·발주·구축·검증·운영 등 전주기를 반영한 AI사업 프로세스 재설계
 - 현행 프로세스와 재설계 프로세스의 단계별 비교표 작성
 - 재설계안에 대한 관계부처, 수행사,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
- o (효과분석) 재설계된 프로세스 적용시 정량적 효과 분석
 - 현행 추진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정량지표 측정
 - ※ (예시) 단계별 소요시간, 전체 사업기간, 사업비, 재작업비용, 과업변경 건수 등
 - 재설계된 프로세스 적용 시 변화될 비용·시간을 추정하여 현행 대비 절감 효과 산출(분석 결과 시각화하여 제시)
 - ※ (예시) 사업기간 00개월 단축, 구축운영 비용 00원 절감, 재작업비용 00% 감소 등

다. 법·제도 개선안 마련

- o (제도개선) 추진체계 유연화에 필요한 법·제도 개정안 마련
 - 재설계된 프로세스 적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 전수조사
 - ※ 법령과 연관된 시행규칙, 고시, 가이드 등 포함하여 조사
 - 개정 대상별 개정안 작성 및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
 - ※ 법령 개정 외 가이드·고시 수준에서 선행 적용 가능한 사항 별도 도출
- o (의견수렴) 법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
 - 관련 부처*, 발주자, 수행사, 법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수행
 - * 조달청, AI전략위, 기획예산처, 재정경제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
 -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여 개정안 및 로드맵에 반영
 - ※ (예시) 단기-가이드·고시 개정, 중장기 - 법률 및 시행령 제·개정

1. 입찰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,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-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,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, 전략,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
-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,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
- 제안서는 “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”하여야 함.
 - “사용가능하다”, “할 수 있다”, “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확인가능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‘계량화’하여야 함
-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.
 - 제안서 본문 내용(별지제외)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
- PDF파일은 최대 4개까지 제출가능하며,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 파일 등은 기타서류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함
 - ※ 제안서, 제안요약서(제안서 발표자료), 기타서류 2부.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
-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내용의 조정은 기술협상시 반영하며, 기술협상서에 작성된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가짐

-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공동이행방식 허용

-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,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는 G2B를 통해 등록
-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-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,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으로 하여야 함(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)
-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,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

2. 세부 작성지침

항 목	작 성 방 법
I. 일반현황	
1. 제안사 일반현황	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
2.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	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.
3.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.
II. 전략 및 방법론	
1. 사업 이해도	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.
2. 추진전략	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.
3. 사업 방법론	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(활용) 경험을 기술한다.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, 제출시기를 기술한다.
III. 사업수행	
1. 세부 수행방안	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되,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IV.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	
1. 관리방법론	사업위험, 사업진도,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,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2. 관리역량	사업관리자(PM)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,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.
3. 일정계획	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, 자원, 핵심인력,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4. 보안관리방안	보안 관리체계, 자료유출방지 대책,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V. 기타사항	
1. 기타	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.

1. 낙찰자 선정방식

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

2. 입찰참가자격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,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'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1169)'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의 2 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) 1호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/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/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(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
 - ※ <소기업/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
 - ※ 단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
 - ※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 함. 단,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낙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

3. 제안 평가 관련 사항

가.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

- 종합평가점수(100%) = 기술능력평가(90%) + 입찰가격평가(10%)
 -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(90%)과 입찰가격(10%)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기술능력평가(90점)와 가격평가(10점)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※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%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
 - ※ 재정경제부(계약예규)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
- 기술평가 : 수요기관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)에서 실시

- 기술평가 적용 규정
 - 참여기관 선정·평가 세부운영지침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)
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(계약예규)
 -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
 -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
-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(PM)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,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(PM)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

나.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세부평가기준	평가배점
일반현황 (20)	제안사 일반현황	·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이 본사업 수행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가?	5
	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	·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이 본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가?	5
	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·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이 적정한가?	10
전략 및 방법론 (30)	사업 이해도	·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적절하게 기술 하였는가?	10
	추진전략	·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	10
	사업 방법론	· 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, 적용(활용) 경험을 기술하였는가? ·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, 제출시기를 적절하게 기술하였는가?	10
사업수행 (30)	공공 AI 사업 유형화 및 유연화 적용 과제 선정	· AI 기술 적용 방식에 따른 공공 AI 사업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해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 · 공공 AI 사업 추진사례 및 관련 법·제도 분석을 통해 유연화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유형 선정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	10
	공공 AI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	· AI사업에 적합한 추진체계 개선과제 및 방향 도출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 · AI사업에 적합한 단계별 유연화된 추진체계 마련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 · 재설계된 프로세스 적용시 정량적 효과분석 방안에 대해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	10
	법·제도 개선안 마련	· 추진체계 유연화에 필요한 법·제도 개정안 마련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 · 법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하였는가?	10
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(18)	관리방법론	· 사업위험, 사업진도,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?	5
	관리역량	· 사업관리자(PM)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,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전문성이 있는가?	5
	일정계획	·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, 자원, 핵심인력, 조직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?	5
	보안관리방안	· 보안 관리체계, 자료유출방지 대책,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?	3
사회적 가치 및 안전 관리 등 (2)	안전 및 보건관리, 재난관리 등	·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·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·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	2
총 계			100

4.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

-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(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- 제출된 서류(제안서 포함)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
-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,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
-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,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
-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- 기타사항은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재정경제부 계약예규, 입찰공고일 현재용)에 의함

5. 제안 안내

-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 참조
-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: 입찰공고문 참조
- 제안서평가 : 입찰공고문 참조
- 문의처 : AI정부기획팀 김미진 선임(053-230-1672, mj123@nia.or.kr)

6. 기타 유의사항

-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
 -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(PM)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
 - ※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

-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(계약목적물)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
 -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
 - ※ 다만,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(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)에 따라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관계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
 -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
-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
 - 사업추진 관련 주·월간 보고(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) 개최 시 영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(사업담당부서)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
 - ※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

상생협력 평가기준 [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]

상생협력 평가기준(제9조제3항제3호 관련)

중소기업 참여 지분율	평가점수	평점
50% 이상	5.0	평점방식은 [주]에 따름
45% 이상 ~ 50% 미만	4.0	
40% 이상 ~ 45% 미만	3.0	
35% 이상 ~ 40% 미만	2.0	
35% 미만	1.0	

[주]

-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(지분율)로 평가한다. 다만,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.
- (분담이행방식 적용례)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%, 정보통신공사 20%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·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%,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%,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(20%)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(80%)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(40%)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%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.
- (공동이행방식 적용례)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%, 정보통신공사 20%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·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%,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%,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%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·구축사업(100%)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(60%)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.

<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·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‘간접비’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·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

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(레드휘슬) 안내 >

- 1. 신고대상 및 내용
 -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
 -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-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,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
- 2. 신고요령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(감사실장), 신고사이트 방문(www.redwhistle.org)
- 3. 신고 시 유의사항 :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, 제보자의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 등)이 허위이거나,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
 - ※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,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

- (19)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, 거래,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. 특히 제안서 접수,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,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.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.

※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『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』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**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**에 기여하고자,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**윤리원칙**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.

하나,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

- ☒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,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·학·연·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.

하나,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
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,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, 사회, 문화,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,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·활용하며,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하나,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
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,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, 경제, 문화,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.
- ☒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고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.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

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

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,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, 입찰·낙찰,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(준공·납품 이후를 포함)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, 입찰·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이해충돌방지법 5조(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신청 의무) 및 14조(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)에 근거,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(공무수행사인),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
 2. 청탁금지법 5조(부정청탁의 금지)에 근거,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
 3. 국가계약법 5조 2(청렴계약)에 근거, 금품·향응(취업 제공)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(授受)하는 행위,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, 알선·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
-